

---

#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

---

제9-1판

(2023. 6. 1.)



## [주요 개정사항]

주요 개정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대상: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에 따라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</li> <li>○ 예외대상: 격리 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자 내용 삭제</li> <li>○ 지원기간: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,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한 날까지</li> <li>○ 신청구비서류: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한 경우)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</li> <li>○ 서식: 격리 통보·명령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관련 내용 삭제</li> <li>○ 부록: 폐지된 수가 반영 및 격리 관련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</li> <li>○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Q&amp;A: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 관련 내용 반영 등</li> </ul>

목차별 주요 개정사항		
목차	구분	개정사항
I. 개요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대상: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</li> <li>○ 예외대상: 격리 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자 내용 삭제</li> <li>○ 지원기간: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,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한 날까지</li> </ul>
II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구 및 비용 지급 절차 명확화: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</li> </ul>
III.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△진단명, △확진 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</li> </ul>
IV. 서식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식 1: 「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」에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명시</li> <li>○ 서식 4: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서식 삭제</li> <li>○ 서식 5: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(사전고지서) 서식 삭제</li> <li>○ 서식 6: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서식 삭제</li> <li>○ 서식 7: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삭제</li> </ul>
V. 부록	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록 1: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관련 내용 삭제(수가종료)</li> <li>○ 부록 2: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관련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</li> <li>○ 부록 3: 방역 조치 전환(격리 권고) 및 변경된 지원 대상·기간 반영</li> </ul>



## [목 차]

<b>I. 개요</b>	<b>1</b>
1. 지원목적	1
2. 근거	1
3. 지원대상	1
4. 지원기간·범위·방식 등	3
<b>II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</b>	<b>4</b>
1. 감염병 신고 및 입원·격리 명령	4
2.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	4
<b>III.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</b>	<b>6</b>
1.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	6
2. (약국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	6
<b>IV. 서식</b>	<b>7</b>
「서식1」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용 신청서 서식	7
「서식2」 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	8
「서식3」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	9
「서식4」 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	10
「서식5」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(사전고지서)	11
「서식6」 코로나19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	12
「서식7」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	13
<b>IV. 부록</b>	<b>14</b>
「부록1」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	14
「부록2」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	15
「부록3」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Q&A	16



## [일러두기]

-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·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·운용하는 것으로서,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을 따름
- 이번 제9-1판은 '23. 6. 1.부터 적용되는 위기단계 조정(1단계) 및 방역 조치 전환(격리권고)에 따라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임
-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

## 1. 개요

### 1. 지원목적

- 국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·격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

### 2.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감염병예방법」”) 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, 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) 등
  - 위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(본인부담금) 지원
  - 다만, 외국인 중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9조의2(외국인의 비용 부담)에 따라 **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**

### 3. 지원대상
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신고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**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**▶
  - ※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

▶ **확진환자:*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(제13-3판)」 사례 정의에 따름

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(한시 시행, '22.3.14~별도 안내 시)

- '22.7.11.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(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)는 지원 중단▶하고, 입원치료비와 “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(부록1)” 지원 계속

▶ 다만, 7월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적용  
▶ 근거: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, '22.6.24.)

- 다만,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**요양시설▶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(원외처방전관련 비용포함)를 본 경우에는 계속 지원**

▶ 요양시설  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
-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

- (예외대상)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9조의2(외국인의 비용 부담)에 따라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**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** 코로나19 치료비(본인부담금)는 **확진환자의 국적에 따라 차등 지원**(’20.8.24.~)

**[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차등 지원]**

지원 분류	지원범위	대상 국가▶ 분류 기준	비고
전액지원 국가	치료비(본인부담금) 전액 지원	재외국민 전액 지원 국가	-
미지원 국가	치료비(본인부담금) 미지원 (전액 본인 부담)	재외국민 미지원 국가	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 국가로 분류
일부 지원 국가	격리실 병실료 (본인부담금)만 지원 (식비, 치료비 등 미지원)	재외국민 일부 지원 국가	격리실 병실료 지원, 그 외 본인 부담

▶ “대상 국가” 관련 상세내용

- (조회 방법)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,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\*에 게시하여 **익월 1일부터 적용됨**
- \* “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 > 알림·자료 > 법령·지침·서식 > 지침”에서 확인 가능



#### 4. 지원기간·범위·방식 등

- (지원기간)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되, 중증면역저하자<sup>▶</sup>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(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) 지원

▶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

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
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
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
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
- 투석이 필요한 환자
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

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’20.5.20)」의 ‘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’

- (지원 범위)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, 조사,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,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

- (필수비급여) 지원대상자의 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에 따른 필수비급여 항목은 지급<sup>▶</sup>

▶ 「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」의 “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(서식3)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
- (인정 치료비)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<sup>▶</sup>의 경우 지원

▶ “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” 주요 내용 (상세사항은 부록1 참조)

-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
  -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,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, 혈액투석 수가(OH011) 등
-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 및 주사제(렘데시비르)의 약값 지원
  - 재택치료자의 경우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

- (응급실)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(입원본인부담금)를 지원하고,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

- (지원 방식)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<sup>▶</sup>

- (지원 예산) 내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(국비 50%)하며,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(국비 100%)

## II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

### 1. 감염병 신고

▶ 확진환자 신고에 관한 상세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 참조

### 2.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

- (청구)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\*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

\* 환자부담금: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, ③필수비급여항목 등

▶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

- (중증면역저하자)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), △진단명, △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위중증 또는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
- (응급실 비용 신청 시)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
- (외국인 치료비)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
- (환자가 납부한 경우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(또는 보호자)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

- (비용지급)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(보건소 등)에서 심사하여 지급하고,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하여 지급
  -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(보건소 등)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

#### [치료비 지급 기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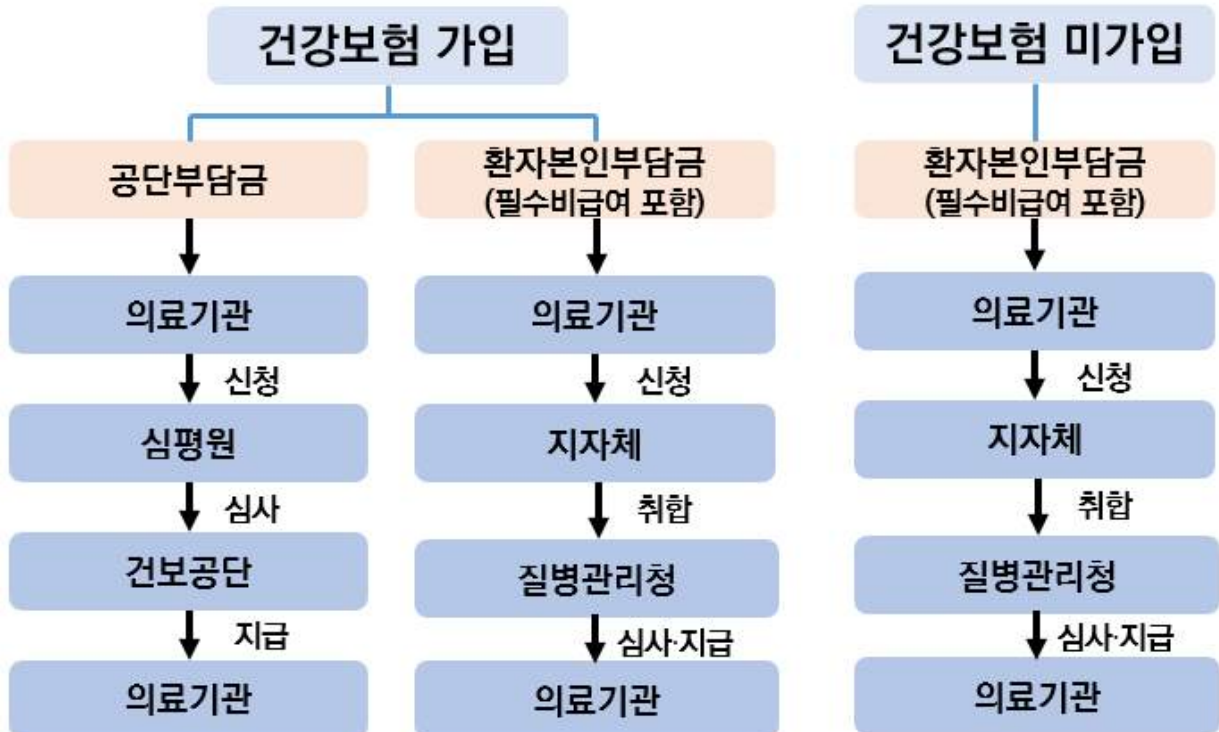
분류	내국인		외국인	
	가입자	미가입자	가입자	미가입자
요양급여 공단 부담	○ (공단)	-	○ (공단)	-
요양급여 본인 부담	○ (지자체)	○ (지자체)	○ (질병청)	○ (질병청)
필수 비급여	○ (지자체)			
비급여	전액 본인 부담			

[청구·지급 절차 개요]

내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청구·지급 절차



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청구·지급 절차



### Ⅲ.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

#### 1.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

제출서류	
비용 신청서	○ (의원·병원) 입원·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[서식1]
공통서류	○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*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6호~제11호 서식 및 「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」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* 간이 영수(수기용)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	○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(진단명, 격리시작일, 확진검사일, 격리해제일 명시) * 진단일,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같음 가능 * 다만,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△진단명, △확진 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
	○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*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,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'법정감염병 신고서'로 같음할 수 있음 *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* 입원·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 (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* 포함)
입원·격리대상자 (또는 보호자) 신청 시 제출서류	○ 통장(계좌) 사본 1부
	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
	○ (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)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	○ 사업자등록증 1부
	○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

#### 2. (약국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

제출 서류	
비용 신청서	○ (의원·병원) 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(약국) 1부[서식2]
공통서류	○ 약국이 발행한 '약제비 영수증·계산서' 1부
	○ 환자의 '처방전 사본' 1부
	○ 필수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'필수비급여 소명서식' 1부
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	○ 사업자등록증 1부 ○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
입원·격리대상자 (또는 보호자) 신청 시 제출서류	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
	○ 통장(계좌) 사본 1부 ○ (보호자가 신청 시) 지원 대상자와 본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
# 서식 1

# 입원·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 서식

## 입원·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

접수 보건소명		접수일자
신청인 (개인 또는 의료기관)	성명(의료기관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)
	전화번호	입원·격리(대상자와의 관계(의료기관은 작성 생략))
	주소	
입원·격리 대상자 정보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국적
	신고일자	
	주소	
입원·격리 세부사항	진단명	
	격리시작일	격리해제일
	확진검사 확인일	
진료비	청구금액(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)	원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·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 서류 <sup>2)</sup>

비용 신청서	1. 입원·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[서식1]	
공통서류	○ <b>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</b> 각 1부 *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6호~제11호 서식 및 「진료비 세 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」 서식의 서식으로 제출 * 간이 영수(수기용)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 <b>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</b> 1부(진단명, 격리시작일, 확진검사일, 격리해제일 명시) * 진단일,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' <b>법정감염병 신고서</b> '로 같음 가능 * 다만,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△진단명, △확진 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 <b>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</b> 각 1부 *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,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' <b>법정 감염병 신고서</b> '로 같음할 수 있음 * 민간검사결과서,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* 입원·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(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*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
입원·격리대상자 (또는 보호자)	○ <b>통장(계좌) 사본</b>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신청 시 제출서류	○ <b>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</b>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	○ <b>(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)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</b>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 <b>사업자등록증</b>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 <b>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</b>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작성방법

- 1) 「신고일자」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·격리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.
- 2)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√ 체크합니다.

## 서식 2

## 약제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 서식(약국)

### 약국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

접수 보건소명		접수일자
신청인(약국)	약국명	전화번호
재택치료 대상자 정보	성명	생년월일 등
	전화번호	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국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(국적:    ) <sup>①</sup>
약제(원외) 처방비	본인부담금	원
	비급여	원
	총 신청액	원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4호, 제6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(원외처방) 비용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

#### 제출 서류

공통서류	1. 약국이 발행한 '약제비 영수증·계산서'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	2. 확진 환자의 '처방전 사본' 1부 <sup>②</sup>	<input type="checkbox"/>
	3. 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'필수비급여 소명서식'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	1. 사업자등록증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	2.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 1부	<input type="checkbox"/>

#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# 작성방법

- 내·외국인을 표시하고, 외국인의 경우 국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국적을 기입

#### [처방전 사본 제출 관련 유의사항]

본 서식인 “약국(원외처방) 비용 신청서” 또는 “약제비 영수증·계산서”의 내용만으로도 “처방전 사본”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상세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사본 미제출 가능

-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(□)에 √ 체크합니다.



**서식 4**

**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**

〈삭제〉



**서식 5**

**입원 · 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(사전고지서)**

〈삭제〉

**서식 6**

**코로나19 입원·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**

**<삭제>**

서식 7

입원 · 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<삭제>

# 부록1

##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

연번	지원 내용	주요 내용	적용 기간
1	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	△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의원에서 코로나19 <b>확진환자</b> 를 격리입원 진료하는 경우	'20.1.4.~별도 안내 시
2	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	△ 노인요양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,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* <b>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권고(감염취약시설) 기간 내에서만 치료비 지원</b>	'22.4.5.~별도 안내 시
3	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전담반 방문료	△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,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* <b>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권고(감염취약시설) 기간 내에서만 치료비 지원</b> ※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'(중앙방역대책본부-24588, '22.8.10.)	'22.8.1.~별도 안내 시
4	장애인거주시설 전담반 방문료	△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,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* <b>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권고(감염취약시설) 기간 내에서만 치료비 지원</b> ※ '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'(중앙방역대책본부-25879, '22.8.26.)	'22.8.29.~별도 안내 시
5	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	△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<b>확진환자</b> 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	'21.12.13.~별도 안내 시
6	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	△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<b>확진환자</b> 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	'21.12.13.~별도 안내 시
7	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	△ 혈액투석 환자 중 <b>확진자</b> 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*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	'21.12.13.~별도 안내 시
8	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	△ 혈액투석 환자 중 <b>확진자</b> 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*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	'21.12.13.~별도 안내 시
9	혈액투석 수가 (수가코드: OH011)	△ 확진자에게 <b>혈액투석</b> 을 시행하는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(수가코드: OH011) 200% 인상 *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	'20.12.24.~별도 안내 시
10	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	△ 코로나19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와 주사제(렘데시비르)의 약값은 지원 *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본인부담	별도 안내 시까지

**부록 2**

**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<삭제>**

[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목적] 입원·격리 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·격리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·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.

## 1.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

### Q1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?
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신고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▶

▶ 확진환자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(제13-3판)」 사례 정의에 따름

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(한시 시행, '22.3.14~별도 안내 시)

-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

### Q2. 외국인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?

-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(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), 해외유입 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하여 ▲전액지원, ▲미지원, ▲일부 지원 국가로 분류

지원 분류	지원범위	비고
전액지원 국가	치료비(본인부담금) 전액 지원	-
미지원 국가	치료비(본인부담금) 미지원 (전액 본인 부담)	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 국가로 분류
일부 지원 국가	격리실 병실료 (본인부담금)만 지원 (식비, 치료비 등 미지원)	격리실 병실료 지원, 그 외 본인 부담

- (조회 방법)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,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\*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(입국일 기준)

\* “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 > 알림·자료 > 법령·지침·서식 > 지침”에서 확인 가능

### Q3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기간?

-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되, 중증면역저하자▶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(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) 지원

▶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

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
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
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
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
- 투석이 필요한 환자
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

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‘20.5.20)」의 ‘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’

\* 격리해제되는 퇴원일(통상적 8일차)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

## 2. 지원 및 청구범위

### Q4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?

-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, 조사,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**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**하고, **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\* 항목은 미지원**

\* (필수비급여) 서식3 “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
- **(응급실)**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**입원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은 확진환자**에 대해서만 치료비(입원본인부담금)를 지원하고,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

- **(퇴원약)**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,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퇴원약 항목\*은 입원 기간 종료 후에 대한 치료로 지원 대상이 아님

\* 퇴원약제비, 퇴원약 조제료, 외래의약품 관리료 등

- 퇴원 시에 격리권고 기간(5일)\*이 남은 경우 그 기간까지만 지원 가능하고, 초과한 경우 미지원

\* 입원환자의 경우 격리권고일이 7일이지만, 퇴원하여 격리권고일은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

Q5. 코로나19 입원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?

-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 목적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, 격리실 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고,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치료 내역에 관하여는 미지원
- 입원·격리 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,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(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지원)

Q6.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진료를 보는 경우 지원 여부는?

-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\*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임에도 진찰료, 약제비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

\*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,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

Q7.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외래진료 시 환자와 의료기관의 확인사항은?

- (환자)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요양시설 격리 중임을 알 수 있는 격리통지서(SMS, 서면통지서 등) 지참
- (의료기관) 요양시설 격리 확진환자 진료 시 격리통지서(SMS, 서면통지서 등), DUR 등을 통해 ①격리기간, ②요양시설 격리자, ③건강보험 가입유무 등을 확인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심평원 또는 보건소에 청구

Q8. 자율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?

-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율격리 중인 혈액투석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또는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투석실 이용 시, 격리실 입원료, 격리관리료, 혈액투석 수가(OH011) 등 지원하지만, 투석 비용, 투석 약제값은 미지원

※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참조

- 외래환자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(검체채취일로부터 5일)까지 지원

Q9.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(약국)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여부는?

-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(약국)에서 처방 시 약값과 부대비용(조제료 등)까지 지원

\*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(보험급여과-794호, '22.2.10.) 참고



Q10.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?

-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(입원본인부담금)를 지원하고,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
- 내원 후 응급실에서 확진된 경우, 코로나19 질환 관련한 검사 및 진료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, 응급실에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선별검사로 확진된 경우 검사비 포함하여 지원
- (청구 유의사항)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

Q11. 확진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?

-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**확진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치료비**는 지원
-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 목적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격리실 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,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치료 내역에 관하여는 환자 부담
- 격리실이 아닌 **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미지원**

Q12.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(요양)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(요양)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(코호트 격리) 지원 여부는?

- 코호트 격리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 격리실(병실료)과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

Q13.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·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?

-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
-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(20.7.9.)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“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” (서식3) 제출
- 다만, 격리실 입원료(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)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(전액 본인부담)으로 지원\*

\*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,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,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-217호(2021.8.11.) 참조

- (검사료)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(건강보험 적용)로 전환하거나, ‘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(서식2)’ 제출 시 지원
  - 인플루엔자 A,B 바이러스항원검사,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

〈 호흡기 검사료 지원 불가 사례 〉

- 인플루엔자 A, B 바이러스 항원검사,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**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**
  - \*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342호 행정해석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선별진료소 ‘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항원검사[간이검사]’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)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

- (제증명료)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,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
  -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,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
  - 중증면역저하자의 치료비 청구(20일 초과)를 위해 의사소견서 등 제출하는 경우 지원
  - PACS CD COPY, 검사기록지 사본
- (약제·치료재료) “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”(서식3) 제출 시 지원
- (병원비품)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,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
  - 환의, 체온계, 이불, 시트, 대변기, 소변기 등
    - \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-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
- (식대) 보호자 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

Q14. 외국인 입원·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?

-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지급
  - \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67조 및 「2023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」 참조
- 다만,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

Q15. 입원·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‘법정 감염병 신고서’로 갈음되는지?

- ‘법정감염병 신고서’로 갈음될 수 있으나,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,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, 코호트 격리,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(응급기록, 진료기록, 경과기록, 활력 징후기록지 등)
- 다만,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) △진단명, △확진 검체채취일, △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

Q16.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,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?

- 환자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입원·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
  -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·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

Q17.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절차는?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

### 3. 기타

Q18. 산재,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?

- 보훈환자,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, 기존 제도(보훈, 산재)에서 보호(지원)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(필수비급여)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·격리 치료비로 지원

Q19. 입원·격리 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?

- 입원·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
  - 진단검사비는 입원·격리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
  -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